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32707 대여금
원 고 배○○ (4*****-2*****)
서울 ○○구 ○○○동 ○○○-○○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한○○(소송구조)

피 고 1. 이○○ (5*****-1*****)
2. 박○○ (5*****-2*****)
피고들 주소 광주시 ○○면 ○○리 ○○빌라 ***동 ***호
피고들 송달장소 서울 ○○구 ○○동 ***-* ○○상가 ○○○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송○○(소송구조)

변 론 종 결 2014. 6. 26.
판 결 선 고 2014. 7. 10.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8.경부터 2007. 4. 5.경까지 피고들(피고들은 부부이다)에게 수차례에 걸쳐 월 3부 내지 월 4부의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15.경 그간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여원리금(이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고 한다)이 2,600만 원에 달한다면서 이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가단4***호로 피고 이덕영 소유의 공주시 ○○동 ***-* 전 327㎡와 광주시 ○○면 ○○리 *** ○○빌라 제***동 제*층 제***호(이하에서는, 위 ○○빌라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09. 4. 17.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0. 10. 4. 600만 원, 2010. 10. 5. 400만 원, 2010. 11. 3.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청을 거절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더 이상의 금전거래는 없었으나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전액 변제되지 못한 채 일부금이 남아 있었다.

라. 그러던 중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으면 대출연기를 연장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데다가 이 사건 가압류와 위 대출연장 불투명 등의 문제로 인하여 피고들의 아들의 회사입사 합격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해제되어야 할 간절한 상황에 처하자 2012. 4. 말경 원고를 만나 이 사건 가압류 말소를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그간 미지급된 대여원금만 1,500만 원에 달한다고 답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들은 2012. 5. 10. 그간의 대여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1,300만 원으로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리하여 피고 박○○은 2012. 5. 10. "현금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1,3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금'이라고 한다)을 매월 20만 원씩 변제하되 형편이 닿으면 100만 원이든지 200만 원이든지 수시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동안의 모든 돈거래는 오늘 이걸로 이 원금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덧붙인 서면(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 박○○과 함께 있던 피고 이○○도 원고에게 피고 박○○과 연대하여 위 정산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기대와 달리 이 사건 가압류를 말소하려면 일단 이 사건 정산합의금 중 700만 원을 먼저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압류를 말소해 주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한 때로부터 한달 뒤인 2012. 6. 11. 피고들을 상대로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으로 2,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던 2014. 6. 24.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최종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2012. 5. 10.경부터 매달 일정액씩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피고들은 차용증 작성 후 이 사건 정산합의금을 전혀 변제한 바 없고 오히려 정산합의금 지급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극렬히 다툼으로써 이를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아직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나머지 채무금도 피고들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정산합의금 중 일부금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들은 일관되게 원고에게 아무런 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산합의금의 존재를 부인하였고, 이로써 피고들은 이 사건 정산합의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정산합의금 상당액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14. 6. 24. 이 사건 정산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함으로써 피고들의 이 사건 정산합의금 내지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산합의금 1,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6.부터(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로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금의 지급을 구한 것은 2014. 6.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부터이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상의 청구원인은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가 피고들에게 1,3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그 전까지의 금전거래관계에 있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채무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와의 그간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그간의 대여원리금을 1,300만 원으로 정하는데 서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피고들이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처분문서로서 통정허위표시 또는 비진의의사표시 등 무효 사유가 있거나 강박 또는 사기 등에 의한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에 원고가 피고들의 공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협박 내지 강박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들은 이미 그간의 원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과다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도 을 1, 3, 5~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살펴 보아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시에는 2,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 직전에 1,300만 원으로 청구를 감축한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였다.

판사 김지혜